

판례변경(2020도6258 전원합의체)에 따른 2021년 SPA 형법(전면개정판) 정오표

〈각론 II 권〉

p.18 아래서 2째줄 관련판례 2번 및 비교판례 교체

2.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자가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10. 경찰 승진, 11·12·19. 법원행시, 14. 경찰간부

▶ 비교판례 :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예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甲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켰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3·18. 순경 1차, 15. 순경 2차

p.25 상단 “③ 이중저당” 전부 삭제

p.41 문제 12번 해설 ㉔ 및 정답 교체

㉔ × : 배임죄 ×(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 정답 ④

p.44 문제 16번 해설 ③ 교체

③ 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